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46,261,250	7,387,838
일반회계	216,702,074	6,501,062
특별회계	29,559,176	886,775
기타특별회계	29,559,176	886,775
상수도사업특별회계	4,606,510	138,195
수질개선특별회계	14,917,645	447,529
의료보호특별회계	403,423	12,103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3,018,663	90,560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3,435,731	103,072
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	3,177,204	95,31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327,26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.